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 K-ETA 신청 안내 [21. 9. 1부]

2021.8.18.

1.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 K-ETA 신청 가능 대상

○ 무사증입국이 정지된 63개 국가(별첨 1) 국민 중 체류 목적이 단기방문(C-3)에 해당하며,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 (C-3 대상) 시장조사, 업무 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과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

○ 단기취업(C-4) 대상자는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 K-ETA 신청 불가

* (C-4 대상) 일시 흥행, 광고·패션 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 지도 등 영리 목적 등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

★ 해당 외국인의 체류 목적이 C-3에 해당하는지 재외공관에서 사전 확인 후 신청

※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K-ETA 신청 대상이 되는 49개 국가* 기업인은 K-ETA 홈페이지(www.k-eta.go.kr) 또는 모바일앱(K-ETA)에서 해당 외국인이 직접 K-ETA 신청

* 미국, 영국, 멕시코,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세인트 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몰타, 아일랜드, 가이아나, 모나코, 바티칸, 산마리노, 안도라,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괌, 뉴칼레도니아, 팔라우,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2. 신청 절차

- 1) 국내기업·기관은 피초청 외국인을 대리하여 기업·기관 업종과 관련이 있는 ★관계부처에 K-ETA 신청 (제출서류 및 관계부처는 하단 참조)
- 2) 관계부처는 해당 외국인이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우선 입국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 후 K-ETA 신청서를 법무부로 전달
- 3) 법무부는 관계부처에서 전달받은 K-ETA 신청서를 토대로 K-ETA 발급 심사 후, 심사 결과(공문)를 해당 기업·기관에 E-MAIL로 통보하며, 관계부처에는 공문으로 결과 통보
※ K-ETA 발급 심사는 공문 접수일로부터 5일 정도 소요
- 4) 해당 기업은 K-ETA 심사 결과(공문)를 해당 외국인에게 전달
- 5) 해당 외국인은 항공 탑승권(Boarding Pass) 발권 및 입국 시 K-ETA 심사 결과(공문) 소지 필수

3. 제출서류

- 기업 관련 서류(사업자 등록증 등), 초청 외국인의 여권 사본 및 명단 등
- ※ 제출서류 관련 세부 사항은 관계부처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관계부처로 문의

4. 서류 접수처

-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 K-ETA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기업·기관 업종과 관련이 있는 ★관계부처에 K-ETA 신청서류 제출

《관계부처 및 분야》

산업부(주요 제조업 및 중견기업), 문체부(문화, 체육), 농식품부(농림, 축산, 식품), 국토부(건설, 교통), 해수부(수산, 해운), 금융위(금융), 중기부(중소기업), 교육부(산학협력), 과기부(IT·정보통신, 기초과학), 복지부(보건·의료), 식약처(식품안전, 의료기기, 의약품), 방사청(방위산업), 방통통신위원회(방송) 등

5. 유효기간 및 체류기간

- K-ETA 심사 통과 공문을 받으신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는 공문의 유효기간 내 입국(통상 입국예정일로부터 10일 전후)
 - ★ 해당 공문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되며, 유효기간이 지난 공문으로는 입국 불가
- 일반적으로 발급되는 K-ETA(사전여행허가서)와는 달리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에게 발급되는 공문은 일회성으로 초청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 후 출국 시 그 효력은 종료
-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의 체류 기간은 국가별 무사증 체류 기간과 동일

6. 기타

- K-ETA 신청이 불가하거나 불허 통보를 받은 경우,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
 - ※ K-ETA를 받은 경우에는 비자 신청 불필요
- '기업인 등 우선입국자' K-ETA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격리가 면제되지 않으며, PCR 음성확인서 및 격리 면제 등 방역 사항은 관계부처에 문의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 대상 63개 국가

총 63개국	
아시아 (17개국)	마카오, 말레이시아, 바레인,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오만, 이스라엘, 일본, 카자흐스탄, 카타르, 쿠웨이트, 타이완, 태국, 터키, 홍콩
미주 (23개국)	과테말라, 그레나다, 도미니카공화국, 바하마,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캐나다,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파라과이, 에콰도르
유럽 (4개국)	러시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세르비아
오세아니아 (11개국)	나우루, 뉴질랜드,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사모아,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피지, 통가, 투발루, 호주
아프리카 (8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소토, 모로코, 모리셔스, 보츠와나, 세이셸, 에스와티니, 튀니지